

의안 번호	2217	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24. 2. 2.(금)
- 제출 자 : 안영호 의원 외 4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2. 2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2. 20.(화)

2. 제안이유

- 어린이 보호구역 등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계획 수립 사항 내 보도와 차도의 구분 사항을 추가하고 추진사업 등을 신설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관리계획 수립 내 보도와 차도의 구분사항 추가(안 제4조 제3호)
- 추진사업 등 신설(안 제6조)

4. 근거법규

-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
-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7조

5. 검토의견

-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**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의 구분 사항**을 추가하고, 체계적인 교통안전과 관리를 위한 추진사업을 신설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임.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근거법규

「도로교통법」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·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5.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
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경찰청장,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1.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
2. 속도 제한, 횡단보도, 기점(起點) 및 종점(終點)에 관한 안전표지
3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
4. 그 밖에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

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

제7조(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)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“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”란 다음 각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.

1.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
2. 도로반사경
3. 방호울타리
4.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적합한 시설

③ 시장등은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
2. 도로반사경

3. 과속방지시설
4. 미끄럼방지시설
5. 방호울타리
6.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적합한 시설